#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취소

[서울고등법원 2022. 11. 2. 2021누68331]

### 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원고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별 담당변호사 이예린)

【피고, 항소인】 국민권익위원회

【피고보조참가인】○○대학교병원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한진)

【제1심판결】서울행정법원 2021. 10. 8. 선고 2020구합68912 판결

【변론종결】2022. 8. 24.

### 【주문】

## ]

- 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- 2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3.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20. 5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.2. 항소 취지 주문과 같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20. 5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.2. 항소 취지 주문과 같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20. 5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.2. 항소 취지 주문과 같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가 2020. 5. 25. 원고에 대하여 한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.2.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.

# [이유]

- 】1. 처분의 경위
- 가. 원고는 2009. 3. 1. 국립○○대학교(이하 '○○대'라 한다)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○○대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2009. 4. 1.부터 ○○대가 설립한 국립대학병원인 피고보조참가인(이하 '참가인'이라 한다)의 재활의학 과에서 근무하여 왔고, 2018. 4. 1. ○○대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.
- 나. 그런데 참가인이 2018. 7. 24. 실시한 '갑질·폭언·폭행·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 설문조사'에서, 원고가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답변이 다수 제출되었다.
- 그에 더하여 재활의학과 소속 작업치료사들은 2018. 9. 27. 참가인에게, '2016년 이후부터 원고로부터 폭행, 폭언, 직권 남용 등을 당해왔다'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였다(이하 '제1고충민원'이라 한다).
  다.
-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. 10. 12. ○○대에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, 원고는 그 소명과 정에서 '작업치료사들이 원고 등 담당의로부터 처방받은 특수작업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의료수가가 낮은 단순작업치료 또는 복합작업치료만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특수작업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였다'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하였다(이하 '1차 신고'라 한다)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라. 제1고충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 중 일부는 원고가 폭언, 폭행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는데, 2018. 11. 27. 그 동영상이 배포되었고, "○○대 병원 교수 '갑질' 동영상 파문" 등의 제목으로 뉴스에도 보도되었다.
- 한편 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그 무렵 원고를 작업치료사들 폭행 등의 사실로 고소·고발하였다[이후 원고는 의료법위반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1. 6. 22. 1심에서 벌금 1,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(제주지방법원 2019고단 2172), 2022. 1. 18. 그 항소심에서 벌금 5,000만 원의 유죄판결(제주지방법원 2021누426)을 받았는데, 위 항소심 판결은 2022. 7. 15.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(대법원 2022도2060) 그대로 확정되었다].
- 마. ○○대 총장은 2018. 12. 24. 제1고충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하였다.
- 바.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. 12. 27. '〇〇대 총장에게 원고의 참가인 재활의학과 직무 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안건 '을 심의하였으나, 부결되었다.
- 원고는 그 소명과정에서 '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개인용 전기치료 패드를 판매하였다'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하였다(이하 '2차 신고'라 한다).
- 사. 또한 원고는 2019. 1.경 참가인 소속 물리·작업치료사들을 국민건강보험법위반, 사기 및 의료기기법위반,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(이하 위 고발을 '3차 신고'라 하고, 1차, 2차 각 신고와 함께 '이 사건 각 신고'라 통칭한다 ).
- 아. ○○대 총장은 작업치료사들의 제1고충민원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. 2. 20.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[원고는 위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각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,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, 2022. 7. 14.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[1심: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097호, 항소심: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누1680호, 상고심: 대법원 2022두32610호].
- 자. 참가인 소속 재활의학과 전공의 2인은 2019. 4. 8. 참가인에게 '원고가 제1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공의들에게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강요하였고,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공의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지시 등으로 잦은 연락을 하였으며, 전공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, 회식 또는 야유회 등의 명목으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도록 지시하였으며, 작업치료사 폭행 장면이 담긴 치료 동영상을 은폐하도록 지시하였다'는 등의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(이하 '제2고충민원'이라 한다).
- 차. 참가인은 2019. 4. 17.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, 조사위원회는 2019. 5. 10. 참 가인에게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.
- 이후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9. 5. 14.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의결하였고, 참가인 원장은 2019. 5. 15. ○○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하였다.
- ○○대 총장은 2019. 5. 20. 원고에 대하여 겸직해제 처분을 하였다.
- 원고는 위 겸직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,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. 10. 10. 위 겸직해제 처분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구체적 행위,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고, 위 겸직해제 처분 시에 도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인지 적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겸직해제 처분을 취소하였다.
- 카.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9. 11. 5. 아래와 같은 이유(이하 '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이유'라 한다)로 다시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의결하였고, 참가인 원장은 2019. 11. 11.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○○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(이하 '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'라 한다)를 하였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(참가인 정관 제33조) 가. 부당한 구명활동의 지시 또는 강요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사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1고충민원을 제기하고, 원고는 그 작업치료사들을 상대로 작업치료 관련 신고를 하는 등 원고와 작업치료사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, 참가인이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,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자신의 지시·감독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① 2018. 9. 7. 23:00경 월례회의 자료 및 작업치료사들의 오더 변경 요청 사실을 수집하여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, ② 2018. 9. 22. 21명 이상의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며, ③ 2018. 12. 1. 알리오(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)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규정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고, ④ 2018. 12. 6. 23:15경 2015년 통계자료, 직원 폭행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, 제1고충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의 연차일정, 작업치료사들의 집회사진, 의료수가별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.
- 나. 전공의에 대한 사적 지시 및 업무시간 외 빈번한 연락 2018. 5. 30. 22:11경 전공의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등 평일에는 근무시간 외에, 당직이 아닌 주말에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등 시간을 가리지않고 업무지시를 하였다.
- 2018. 8. 18. 소외 2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하여 위 교수와 청와대를 비난하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정치·경제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.
- 2018. 9.경부터 2018. 11.경까지 전공의 중 1인에게 약 2,000통의 전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내용의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내용이었다.
- 전공의에게 빵을 만들어 먹자고 하여 전공의가 06:00경부터 빵을 굽기도 하였고, 2017. 6. 28.경에는 근무시간 중에 토스트와 빵 28개를 굽겠다고 하면서 21:00경 관련 지시를 하였으며, 그 밖에도 떡볶이, 부대찌개 등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매하도록 시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였다. 다.
- 전공의 및 작업치료사에 대한 폭언, 욕설, 폭행 제1고충민원으로 징계 등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전공의 중 1인에 게 "이 새끼가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? 얘네들이 얘네 셋이 A, B, C? 야 B 완전 개쓰레기 새끼네", "C, C 이 개새끼가 그냥 진짜 욕나온다.
  - 아예 죽여버렸어야 됐는데 봐줬더니 그런 그지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짜증나는 거지"라고 하여 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에 대한 욕설을 한 바 있다.
- 그 밖에도 2017년경 환자, 보호자, 의료진, 의료기사 및 간호사, 선후배 전공의들이 보는 앞에서 전공의의 등을 때리거나 꼬집고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.
- 라. 전공의에 대한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 및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종용 전공의들에게 ① 2017. 7. 21. 물놀이를 가자고 하여 11:30경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으로 물놀이를 갔고, ② 2018. 4. 2. 벚꽃놀이를 가자고 하여 17:00경 제주시 삼도동 전농로로 벚꽃놀이를 갔으며, ③ 2018. 6. 1. 놀러가자고 하여 15:00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해수욕장에 갔고, ④ 2018. 7. 11. 회식을 하자고 하여 17:20경 도남오거리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으며, ⑤ 2018. 7. 31. 회식을 하러 가자고 하여 17:20경 제주시 금복촌 횟집에 가게 하는 등 전공의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위 ③의 삼양동 해수욕장 무단이탈 건이 문제되자 2018. 10. 2. 13:00경 전공의에게 전화를 걸어 "나머지 애들이랑 절대 같이 갔다는 소리하면 안 되고"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하였다.
- 마. 관련 동영상 은폐 시도 제1고충민원 관련 환자평가를 녹화한 동영상과 관련하여, ① 전공의에게 언어치료사가 관리하는 작업치료 과정 촬영 동영상이 저장된 캠코더 및 컴퓨터 외장하드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강요하였고, ② 근전도실에 보관되어 있는 작업치료 과정 촬영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져가 2018. 9. 7. 16:00경 재활센터 내 제2진료실의 컴퓨터로 옮긴 후 2017년까지의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며, 2018. 9. 27. 그 컴퓨터로 옮긴 동영상까지 모두 삭제하였고, ③ 작업치료 동영상 외장하드를 보관하고 있던 언어치료사에게 연락하여 동영상 은폐를 시도하였음에도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.
- 2.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·감독 능력 부족 위와 같은 전공의 관련 건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행 건 등으로 이미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과 아울러 병원 전공의, 재활의학과 의료진(교수), 의료기사 및 병동 간호사 등 이 원고가 정직처분을 마친 후 복귀하면 사직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.
  - 그 밖에 졸업생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감안할 때 원고는 지도교수 및 겸직교원으로서 더 이상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·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.
- 타. 한편 참가인 원장은 2019. 11. 6. 제2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전공의들로부터 원고와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을 이유로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'전공의법'이라 한다) 제11조, 제11조의2, 「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관리를 위한 지침」 제8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'① 입원환자 주치의 배정에서 제외, ② 재활의학과 전공의들에 관한 회의 등 참여 제한, ③ 전공의들의 의사에 반한 연락 금지'를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와의 분리명령(이하 '이 사건 분리명령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- 파. 원고는 2019. 12. 3. 피고에게 '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'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'① 참가인 특별 인사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신고를 한 사실을 해당 치료사들에게 유출 (이하 이를 '비밀보장의무 위반'이라 한다)함으로써 그 치료사들이 원고가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하여 언론에서 '○○대병원 갑질 교수'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, 도리어 참가인은 언론 기사로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명분으로 원고에 대한 일련의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(이하 '① 신청사유'라 한다). ②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의 취하를 종용하고, 사직을 권유하였고(이하 '② 신청사유'라 한다), ③ 관련된 허위사실(원고가 치료사들을 폭행 하는 장면이 저장된 외장하드 은폐 시도)을 유포하여 참가인 소속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하였다(이하 '③ 신청사유'라 한다), ⑤ ○○대 총장에게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까지 하였다(이하 '⑤ 신청사유'라 한다). 이와 같은 참가인의 일련의 부당한 조치는 공익신고인 이 사건 각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다'라고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 1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한편(이하 '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'이라 한다), '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로 인해 ○○대 총장이 곧 겸직해제 조치를 취할 우려가 명백한 상황이다'라고 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(겸직해제) 금지도 신청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'이라 하고, 이 사건 보호신청 조치와 함께 '이 사건 각 신청'이라 한다)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하. 이에 피고는 조사를 거친 후 2020. 5. 25.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의 취지를 '참가인이 ○○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한 것(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)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이므로 원상회복을 신청한다'로 정리한 후 '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이 사건 각 신고는 공익신고에,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, 이 사건 각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'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결정'이라 한다).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다.

#### [이유]

- 】1. 처분의 경위
- 가. 원고는 2009. 3. 1. 국립〇〇대학교(이하 '〇〇대'라 한다) 의과대학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〇〇대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2009. 4. 1.부터 〇〇대가 설립한 국립대학병원인 피고보조참가인(이하 '참가인'이라 한다)의 재활의학 과에서 근무하여 왔고, 2018. 4. 1. 〇〇대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.
- 나. 그런데 참가인이 2018. 7. 24. 실시한 '갑질·폭언·폭행·성희롱 근절을 위한 노사공동 캠페인 설문조사'에서, 원고가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답변이 다수 제출되었다.
- 그에 더하여 재활의학과 소속 작업치료사들은 2018. 9. 27. 참가인에게, '2016년 이후부터 원고로부터 폭행, 폭언, 직권 남용 등을 당해왔다'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식으로 제기하였다(이하 '제1고충민원'이라 한다).
  다.
-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. 10. 12. ○○대에 원고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고, 원고는 그 소명과 정에서 '작업치료사들이 원고 등 담당의로부터 처방받은 특수작업치료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의료수가가 낮은 단순작업치료 또는 복합작업치료만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특수작업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하였다'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하였다(이하 '1차 신고'라 한다).
- 라. 제1고충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 중 일부는 원고가 폭언, 폭행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는데, 2018. 11. 27. 그 동영상이 배포되었고, "○○대 병원 교수 '갑질' 동영상 파문" 등의 제목으로 뉴스에도 보도되었다.
- 한편 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그 무렵 원고를 작업치료사들 폭행 등의 사실로 고소·고발하였다[이후 원고는 의료법위반 및 폭행죄로 기소되어 2021. 6. 22. 1심에서 벌금 1,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(제주지방법원 2019고단 2172), 2022. 1. 18. 그 항소심에서 벌금 5,000만 원의 유죄판결(제주지방법원 2021누426)을 받았는데, 위 항소심 판결은 2022. 7. 15. 그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(대법원 2022도2060) 그대로 확정되었다].
- 마. ○○대 총장은 2018. 12. 24. 제1고충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 하였다.
- 바.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. 12. 27. '〇〇대 총장에게 원고의 참가인 재활의학과 직무 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안건 '을 심의하였으나, 부결되었다.
- 원고는 그 소명과정에서 '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개인용 전기치료 패드를 판매하였다'는 사실을 참가인에게 신고하였다(이하 '2차 신고'라 한다).
- 사. 또한 원고는 2019. 1.경 참가인 소속 물리·작업치료사들을 국민건강보험법위반, 사기 및 의료기기법위반,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(이하 위 고발을 '3차 신고'라 하고, 1차, 2차 각 신고와 함께 '이 사건 각 신고'라 통칭한다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).

- 아. ○○대 총장은 작업치료사들의 제1고충민원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. 2. 20.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[원고는 위 직위해제와 정직 처분에 불복하여 각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,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, 2022. 7. 14.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[1심: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097호, 항소심: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누1680호, 상고심: 대법원 2022두32610호].
- 자. 참가인 소속 재활의학과 전공의 2인은 2019. 4. 8. 참가인에게 '원고가 제1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전공의들에게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강요하였고,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공의들에게 업무 외 사적인 지시 등으로 잦은 연락을 하였으며, 전공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, 회식 또는 야유회 등의 명목으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도록 지시하였으며, 작업치료사 폭행 장면이 담긴 치료 동영상을 은폐하도록 지시하였다'는 등의 내용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(이하 '제2고충민원'이라 한다).
- 차. 참가인은 2019. 4. 17.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, 조사위원회는 2019. 5. 10. 참 가인에게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.
- 이후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9. 5. 14.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의결하였고, 참가인 원장은 2019. 5. 15. ○○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하였다.
- ○○대 총장은 2019. 5. 20. 원고에 대하여 겸직해제 처분을 하였다.
- 원고는 위 겸직해제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,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. 10. 10. 위 겸직해제 처분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구체적 행위,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았고, 위 겸직해제 처분 시에 도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인지 적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겸직해제 처분을 취소하였다.
- 카.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는 2019. 11. 5. 아래와 같은 이유(이하 '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이유'라 한다)로 다시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를 의결하였고, 참가인 원장은 2019. 11. 11.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○○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 요구(이하 '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'라 한다)를 하였다.
- 1.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(참가인 정관 제33조) 가. 부당한 구명활동의 지시 또는 강요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사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1고충민원을 제기하고, 원고는 그 작업치료사들을 상대로 작업치료 관련 신고를 하는 등 원고와 작업치료사들 간 갈등이 발생하여, 참가인이 이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,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 자신의 지시·감독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① 2018. 9. 7. 23:00경 월례회의 자료 및 작업치료사들의 오더 변경 요청 사실을 수집하여 자신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, ② 2018. 9. 22. 21명 이상의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으며, ③ 2018. 12. 1. 알리오(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)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규정을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고, ④ 2018. 12. 6. 23:15경 2015년 통계자료, 직원 폭행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, 제1고충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의 연차일정, 작업치료사들의 집회사진, 의료수가별 통계 자료 등을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.
- 나. 전공의에 대한 사적 지시 및 업무시간 외 빈번한 연락 2018. 5. 30. 22:11경 전공의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등 평일에는 근무시간 외에, 당직이 아닌 주말에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등 시간을 가리지않고 업무지시를 하였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018. 8. 18. 소외 2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하여 위 교수와 청와대를 비난하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정치·경제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.
- 2018. 9.경부터 2018. 11.경까지 전공의 중 1인에게 약 2,000통의 전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내용의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내용이었다.
- 전공의에게 빵을 만들어 먹자고 하여 전공의가 06:00경부터 빵을 굽기도 하였고, 2017. 6. 28.경에는 근무시간 중에 토스트와 빵 28개를 굽겠다고 하면서 21:00경 관련 지시를 하였으며, 그 밖에도 떡볶이, 부대찌개 등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매하도록 시키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였다.
  다.
- 전공의 및 작업치료사에 대한 폭언, 욕설, 폭행 제1고충민원으로 징계 등 논의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전공의 중 1인에 게 "이 새끼가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? 얘네들이 얘네 셋이 A, B, C? 야 B 완전 개쓰레기 새끼네", "C, C 이 개새끼가 그냥 진짜 욕나온다.
  - 아예 죽여버렸어야 됐는데 봐줬더니 그런 그지같은 새끼들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짜증나는 거지"라고 하여 민원을 제기한 작업치료사들에 대한 욕설을 한 바 있다.
- 그 밖에도 2017년경 환자, 보호자, 의료진, 의료기사 및 간호사, 선후배 전공의들이 보는 앞에서 전공의의 등을 때리거나 꼬집고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.
- 라. 전공의에 대한 근무지 무단이탈 지시 및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종용 전공의들에게 ① 2017. 7. 21. 물놀이를 가자고 하여 11:30경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으로 물놀이를 갔고, ② 2018. 4. 2. 벚꽃놀이를 가자고 하여 17:00경 제주시 삼도동 전농로로 벚꽃놀이를 갔으며, ③ 2018. 6. 1. 놀러가자고 하여 15:00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해수욕장에 갔고, ④ 2018. 7. 11. 회식을 하자고 하여 17:20경 도남오거리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으며, ⑤ 2018. 7. 31. 회식을 하러 가자고 하여 17:20경 제주시 금복촌 횟집에 가게 하는 등 전공의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.
- 제1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위 ③의 삼양동 해수욕장 무단이탈 건이 문제되자 2018. 10. 2. 13:00경 전공의에게 전화를 걸어 "나머지 애들이랑 절대 같이 갔다는 소리하면 안 되고"라고 허위 진술을 종용하였다.
- 마. 관련 동영상 은폐 시도 제1고충민원 관련 환자평가를 녹화한 동영상과 관련하여, ① 전공의에게 언어치료사가 관리하는 작업치료 과정 촬영 동영상이 저장된 캠코더 및 컴퓨터 외장하드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강요하였고, ② 근전도실에 보관되어 있는 작업치료 과정 촬영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져가 2018. 9. 7. 16:00경 재활센터 내 제2진료실의 컴퓨터로 옮긴 후 2017년까지의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며, 2018. 9. 27. 그 컴퓨터로 옮긴 동영상까지 모두 삭제하였고, ③ 작업치료 동영상 외장하드를 보관하고 있던 언어치료사에게 연락하여 동영상 은폐를 시도하였음에도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다.
- 2.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·감독 능력 부족 위와 같은 전공의 관련 건 뿐만 아니라 재활의학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폭행 건 등으로 이미 정직처분을 받은 사실과 아울러 병원 전공의, 재활의학과 의료진(교수), 의료기사 및 병동 간호사 등 이 원고가 정직처분을 마친 후 복귀하면 사직을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.
  - 그 밖에 졸업생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감안할 때 원고는 지도교수 및 겸직교원으로서 더 이상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·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타. 한편 참가인 원장은 2019. 11. 6. 제2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해당 전공의들로부터 원고와 분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음을 이유로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(이하 '전공의법'이라 한다) 제11조, 제11조의2, 「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관리를 위한 지침」 제8조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'① 입원환자 주치의 배정에서 제외, ② 재활의학과 전공의들에 관한 회의 등 참여 제한, ③ 전공의들의 의사에 반한 연락 금지'를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와의 분리명령(이하 '이 사건 분리명령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- 파. 원고는 2019. 12. 3. 피고에게 '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'이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'① 참가인 특별 인사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신고를 한 사실을 해당 치료사들에게 유출 (이하 이를 '비밀보장의무 위반'이라 한다)함으로써 그 치료사들이 원고가 나온 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에 유포하여 언론에서 '○○대병원 갑질 교수'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, 도리어 참가인은 언론 기사로 참가인의 명예가 훼손된 데에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명분으로 원고에 대한 일련의 부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(이하 '① 신청사유'라 한다). ② 참가인 특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고의 취하를 종용하고, 사직을 권유하였고(이하 '② 신청사유'라 한다), ③ 관련된 허위사실(원고가 치료사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저장된 외장하드 은폐 시도)을 유포하여 참가인 소속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하였다(이하 '③ 신청사유'라 한다). ④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분리명령 등 조직적인 진료방해를 하다가(이하 '④ 신청사유'라한다), ⑤ ○○대 총장에게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까지 하였다(이하 '⑤ 신청사유'라한다). 이와 같은 참가인의 일련의 부당한 조치는 공익신고인 이 사건 각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다'라고 주장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 1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한편(이하 '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'이라한다), '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로 인해 ○○대 총장이 곧 겸직해제 조치를 취할 우려가 명백한 상황이다'라고 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(겸직해제) 금지도 신청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'이라 하고, 이 사건 보호신청 조치와 함께 '이 사건 각 신청'이라한다).
- 하. 이에 피고는 조사를 거친 후 2020. 5. 25.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의 취지를 '참가인이 ○○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한 것(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)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이므로 원상회복을 신청한다'로 정리한 후 '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이 사건 각 신고는 공익신고에,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조치에 각 해당하나, 이 사건 각 신고와 이 사건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'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결정'이라 한다).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